

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



성 북 구
(복지정책과)

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

의안 번호	5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6년 4월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구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성북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(26.6.30)이 도래함에 따라,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 현황

연번	시설명	소재지	현 위탁체	규모	현 위탁기간
1	성북구 보훈회관	성북구 화랑로 130 (월곡2동)	성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(대표 양승훈)	토지 992㎡ 건물1,215㎡ (지하1, 지상3)	2023.07.01. ~ 2026.06.30

나. 위탁기간 : 2026.7.1. ~ 2029.6.30.(3년)

다. 개 관 일 : 2007.7.1.

라. 인력현황 : 3명 (사무원1, 경비원1, 미화원1)

마. 주요시설 : 보훈단체 사무실(10개), 강당, 체력단련실, 목욕탕

- 운영 프로그램 : 스포츠댄스 교실, 국선도 교실, 이·미용

바. 운영예산 : 286,944천원 (인력운영비 126,075천원, 수용비 160,869천원)

사. 위탁 사업의 범위

- 1) 보훈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
- 2) 9개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회원 간 교류·화합을 위한 사업
- 3)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
- 4)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운영 및 위탁관리)

-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국가보훈단체(협의회를 포함한다)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.
-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(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한다)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.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)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